

의안번호	2219212
의 퇴 인	최기상의원
회 답 일	2026.7.23.
추계번호	26B2648

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 (정의)	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3. “지원주택”이란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을 말한다.<신설> 4. “주거유지지원서비스”란 주거약자용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.<신설>	의무규정
2	안 제5조 (주거지원계획의 수립)	제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4.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	의무규정
3	안 제10조제1항 (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)	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(이하 “지방공사”라 한다)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고, 주거약자용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4	안 제16조의2 신설 (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)	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주거약자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(제1항) 1. 입주지원 및 상담 2. 주택 시설관리 지원 3.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4. 주거약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.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6.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7.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공공·사회복지서비스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제1항에 따른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,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2항)<신설>	

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규정
1	안 제2조 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5조 (주거지원계획의 수립)	
3	안 제10조제1항 (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)	
4	안 제16조의2 신설 (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)	

2. 상세사유

□ (안 제10조제1항) 개정안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, 주거약자용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임

- 지원주택은 주거약자용 주택에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급하려는 주택으로,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, 설비의 설치, 주택관리 및 주거유지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지원주택 공급규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, 지원주택의 의무공급 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, 비율, 지원주택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, 복리 시설, 서비스 제공공간 설치 방법 및 재원분담비율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

한계가 있음

- (안 제2조·안 제5조·제16조의2 신설) 개정안은 주거지원계획에 주거지원유지서비스를 추가하고,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거지원센터에서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입주지원 상담, 주택 시설관리 지원,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등의 주거유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이러한 주거유지서비스를 주거지원계획에 포함하고, 이를 직접 제공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인건비, 위탁사업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재 동법에 따른 주거지원센터는 설치되지 않았고,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¹⁾에 따라 주거복지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거유지서비스가 이 센터를 통하여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([참고자료]에서 확인)
 - －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국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주거복지센터 6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는 직영 또는 공공·민간 위탁 방식으로 69개소를 운영하고 있음
 - 그런데, 주거유지 서비스 지원의 대상, 절차,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, 서비스 지원대상인 주거약자의 범위와 대상자 수, 입주자 혹은 가구 당 필요한 주거유지서비스 수요, 서비스 제공방법 및 재정분담 비율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다만, 국토교통부는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사업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사업과 주거복지센터 사업을 제출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1) 제17조(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)

②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센터를 「주거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IV. 부대의견

☐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388-3735	jangwy93@nabo.go.kr

[참고자료] 고령자복지주택 및 주거복지사업

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□ 고령자복지주택 사업

- (정의) 고령자 복지주택은 입주상담, 시설관리, 공과금 관리, 사회복지서비스, 의료·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
- (재원)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비용 지원, 지방정부는 주거유지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

□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

- (사업개요) 「주거기본법」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임
- * ('26.6월 기준) 국가는 LH에 위탁 설치·운영 중(63개소)이며, 지방정부는 직영·위탁(공공 또는 민간) 등 방식으로 설치·운영 중(69개소)
- 다만, 주거복지센터 운영비에 대한 별도 지원 없이 센터에서 추진하는 '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*'을 국비 지원 중임
- * 쪽방, 고시원, 노숙인 시설, 침수우려 지하층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, 가정폭력 피해자 등 대상으로 공공·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

<참고 : 주거상향 지원사업 예산 현황('26년 기준)>

(단위 : 억원)

합계	LH	지방정부	
	국비	국비	지방비
150	50	50	50

- * (LH 주거복지센터) 국비 100% / (지방정부 주거복지센터) 국비 50%, 지방비 50%